

#### 보도참고자료



보도시점

배포 시

배포

2024. 2. 1

#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4 - 8호						
등급	주의 경고 위험					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			

### 소비자경보 내용

◈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 (www.gaonplace.com)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

##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- \*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
  - **소비자**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.

#### ※ 참고

- □ '24.2월 현재 **부동산 조각투자**로 **혁신금융사업자 지정**을 받은 **회사는 카사 코리아(kasa.co.kr), 펀블(funble.kr), 루센트블록(sou.place) 3개사**입니다.
  -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**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**에 따라 **1억원의 과태료**가 **부과**되며,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·등록 없이 **자본시장법**상 **금융업**을 영위하는 경우 **형사처벌 대상**에 해당됩니다.

## 2 구체적 사기 수법

- □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**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** 받았다는 **보도자료**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며,
  -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**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**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**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**\*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
- □ 또한,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·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.
  -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,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됩니다.

## 3 소비자 행동 요령

- □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!
  -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
   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,
    -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\*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- \* <a href="https://sandbox.fintech.or.kr">https://sandbox.fintech.or.kr</a> 內 '지정사례' → '지정서비스 소개'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(☎02-6375-1523)에 문의
  - 아울러, **혁신금융사업자**로 **지정받지 않은 자**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**금감원에 신고**\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\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'불법금융신고센터' → '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'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530)
			서기관	김보균 (02-2100-2841)
<총괄>	금융혁신과	담당자	사무관	김혜수 (02-2100-287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곽범준 (02-3145-7160)
	디지털혁신국	담당자	팀 장	심은섭 (02-3145-7162)
<공동>	한국핀테크지원센터	책임자	부 장	김주환 (02-6375-1520)
	금융혁신부	담당자	차 장	성백규 (02-6375-1521)

##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

